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08년 5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배치열)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 제139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131조 → 제140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p>	<p>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39조제2항에 따라-----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3조(과태료) ① -----사 유 없이----- ----- --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 -----.</p>

현행	개정안
<p>1.·2. (생략)</p> <p>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p> <p>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용접 등</u>-----</p> <p>4.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140조를</u>----- -----.</p> <p>제5조(시행규칙) -----<u>시행에 필요한</u>----- -----.</p>

3.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도로를 일시적으로 무단점용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48호
의결 년월일	2008. 5. 23 (제143회)

제출년월일 : 2008. 5. 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 제139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131조 → 제140조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를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접등”을 “용접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1조의 규정을”를 “제140조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p>	<p>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39조제2항에 따라-----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3조(과태료) ① -----사 유 없이----- ----- --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 -----.</p>

현행	개정안
<p>1.·2. (생략)</p> <p>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p> <p>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용접 등</u>-----</p> <p>4.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140조를</u>----- -----.</p> <p>제5조(시행규칙) -----<u>시행에 필요한</u>----- -----.</p>

〈관계법령발췌서〉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